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

제25조제2항 중 “공제회”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로 한다.

별표의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란 제4호 후단 중 “말하며”를 “말하며, 주·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2,000원”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 1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u>제9조제1항</u>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 ----- ----- ----- 다음 ----- ----- -----.
② (생략)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② (현행과 같음)
① (생략)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u>공제회</u>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② ----- <u>사업장의</u> <u>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u> <u>현장사무실</u> 등에 <u>공제회</u> ----- -----.
	③ (현행과 같음)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주·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발급받으려는 내용	경력 (직종)	[] 전체	[] 특정 직종()	[] 특정 기간(~)	
	직업 훈련	[] 전체	[] 특정 기간(~)		
	자격 사항	[] 전체	[] 특정 자격()		
용 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름
연령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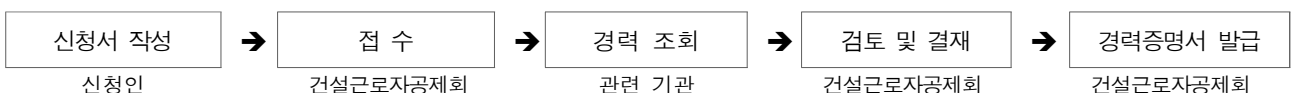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해당 서류가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범위	사업장별 [] 사업의 전부[]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총공사금액	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원	건설호(실) 수	호(실)		
	사업기간		착공일		주된 공사종류			
	발주자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출연기관[] 정부재출자기관[] 민간[] 기타[]					
주소 및 성명(명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 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3.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	--	--------

